

충주시의회
제132회 임시회
2008. 11. 21(금)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보고서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 11. 11	2008. 11. 11	2008. 11. 17	심사 보류	홍진옥 의원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	"	"	심사 보류	심재연 의원	
충주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2008. 11. 17	교통 과장	
충주시 경관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	"	2008. 11. 17	건축디자 인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담배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나.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충주시 농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기술이나 품질로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풍요로운 농촌을 만드는데 공헌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충주시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충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라. 충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충주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등의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며 충주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을 만들기 위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주시 전체의 경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권장구역”을 지정 할 수 있음(안 제4조)
- 시장은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업소에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나.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 시상부문은 쌀생산 부문 등으로 정함 (안 제4조)
- 읍·면·동장, 기술센터소장은 각 단체의 의견을 듣고 농업인대상 후보자를 추천 (안 제6조)
- 농업인대상 수상자는 영농자금 우선 선정, 국내·외 연수 우선 선정 등의 특전을 부여 (안 제12조)

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안 제2조)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임기 (안 제4조)

라. 충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권역별 경관 형성 방향 제시(5권역)
- 경관지구 신설(5개)
- 경관 특화계획
(공공디자인, 색채, 야간경관, 경관시설물, 특화거리)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 조례는 담배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돋고,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도모하며, 또한 비흡연자에 대해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

적이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담배에 대한 규제사항으로 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또는 제한 담배 판매장소에 대한 제한 담배자판기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고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기타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흡연구역을 별도 지정하고 칸막이와 환기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은 「경범죄처벌법」에서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 본 조례에서는 금연을 권장하고, 홍보하며 흡연을 하더라도 흡연장소와 아닌 곳을 구별하도록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4조에서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는데

실내 뿐만이 아닌 실외의 공간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 대하여 금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장소는 별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5조에서 상시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고 관련 표지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 조항의 “클린에어존”은 기「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 기준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 시장이 “클린에어존”이라고 명시하여 시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다시 한번 금연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나.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 이 조례는 우리시의 농업분야에서 창의적인 기술이나 품질로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업의 가능성을 연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동기유발을 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에서 시상부문은 쌀, 과수, 원예·특작, 축산 부문 등 기본적으로 4개 부문으로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상자의 자격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규정하였고, 일정한 결격자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산하도록 한 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상자에 대한 특전은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상의 가치를 높여 주는 것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영농자금선정이나,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시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상급기관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는 등의 조치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본 안건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 교통안전법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었으나 교통안전에 관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자 2006. 12. 28일 법률 제8121호로 전부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하여 중앙정부, 광역, 기초 자치단체별로 교통안전을 위해 해야 할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입니다.
- 주요내용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심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종전에는 국가가 수립한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하여 추진하였지만 획일적인 중앙정부 지침에 맞추다 보니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본 법에서는 5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세부적으로는 매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망자가 있는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3건 이상 발생하여 해당 구간의 교통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교차로, 횡단보도, 또는 일정구간의 도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법의 취지는 해당지역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지역의 교통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고자 하는 바
본 조례는 그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교통안전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 다만 교통과에서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라는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양 조례간 유사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주시 교통자문위원회」는 교통 중·장기계획, 주요 교통정책 및 시책, 택시면허 공급조정, 대중교통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양 위원회를 적법하게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보아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 충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경관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유엔평화공원 일대, 충주호 체험관광지 등의 주요 사업도 경관을 살려야만 사업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고
- 충주댐을 중심으로 한 수변구역에 대해서도 수려한 경관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계획하여 명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이 2007년 5월에 제정 공포되면서 시장·군수는 지역의 특징과 자연·문화·역사를 담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 향후에는 충청북도의 경관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 경관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인 바 지역개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충주시도시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본 경관기본계획은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중요한 하나의 분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현재 우리시 관내에 기 결정된 경관지구는 없고 본 계획에 의거하여 경관지구를 정하게 될 예정인 바 경관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의 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 경관계획을 보면 권역별로 경관형성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주덕 이류권, 중앙탑 앙성권, 충주호권, 수안보권, 시가지권으로 대별하였습니다.
- 또 경관지구의 유형으로 자연수변, 휴양수변, 구릉지, 역사문화, 도로경관지구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안한 바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자연, 수변, 시가지, 전통, 조망권 경관지구와의 상호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경관권역과 별도로 공공디자인, 색채, 야간경관, 경관시설물, 특화거리조성 등의 특화를 통하여 경관을 완성하고자 하였으며 2006년 10월 제110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2020 충주도시기본계획'의 경관 및 미관계획의 범주안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 본 경관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에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충주시 경관의 느낌은 “식상하다, 단조롭다, 조잡하다, 부조화스럽다, 낮은수준이다.”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산지, 역사, 수변경관은 좋지만, 주거지, 가로, 상업지역 경관은 초라하고 번잡스럽기까지 합니다.
- 도심경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일 것입니다.
업주들간 치열한 경쟁의식으로 더 크고, 더 자극적으로 변질되고 어떤 경우는 건물의 외관을 통째로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있지만 도시미관을 위하여 좀 더 친근하고 예술성을 가미한 디자인을 한다면 광고물 하나만으로도 시가지 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 현재 시의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충주시 경관조례」가 2006년 1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경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만들었고 조례의 내용이 너무 선언적인 바 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설정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관계획은 경관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규제가 따르게 되지만 기타 색채, 조명 등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조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금번 경관기본계획수립을 계기로 우리시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됨은 물론 시민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질의 : 시청은 금연구역인가, 의회로비는 어떻게 되는건가
- 답변 : 법령에 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 ▶ 질의 : 시민대상조례 산업경제부문에서 농업관련 대상이 있는데 농업부문만 떼어서 보겠다는건지
- 답변 : 시민대상 조례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있음

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질의 : 교통자문위와 교통안전정책조례안이 비슷함 통합운영할 생각은 있는지?
- 답변 : 동감함 두개를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라. 충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 질의 : 경관 기본계획에 재오개, 반기문총장의 생가, KBS앞 통신사길 등이 반영이 안되었음
- 답변 : 본 경관 기본계획에는 방향설정만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계획에 의해 추진될 것임

6. 심사결과

가. 충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함)

나.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 심사보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함)

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라. 충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의견서 채택

- 붙임 : 충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1부

의 견 서

□ 의 안 명 : 충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심사경과

- 의안번호 : 1000
- 상정일자 : 2008. 11. 17
- 의결일자 : 2008. 11. 17
- 관계법령 : 경관법 제10조 제5항

□ 의 견

- 훌륭한 경관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관광충주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미래전략과도 맞는다고 할 수 있음
- 제시된 충주시경관기본계획에 의하여 식상하고, 단조롭고, 조잡하고 낮은수준인 충주시의 경관을 한단계 높여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된 충주시의 대외경쟁력, 관광인프라, 시민의 삶의 질이 동반 상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 다만, 경관지구 지정을 할 때에는 시민의 재산권의 제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는 물론, 관련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바람

2008. 11. .
산업건설위원장